

“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”



보 도 자 료

“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”

- ▶ 보도일시: 9.15(목) 조간,
<인터넷 9.14(수) 12:00 이후>
- ▶ 총 5 쪽

❖ 근로복지과 과장 하형소
사무관 황병길

☎ 02-2110-7418, 010-5602-0070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대폭 확대

- 긴급생활유지비, 고교생 자녀학자금, 산후조리원 이용비 등 신규 지원 -

-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해 긴급 생활유지비와 고교생 자녀학자금 용자를 신설하고 출산후 산후조리원 이용비를 의료비로 인정해 주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.

구 분		인정 요건
기 준	의료비	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(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및 약제비)
	노부모요양비	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5세 이상 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에 드는 비용
	장례비	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, 부모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
	혼례비	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비용
신 설	긴급생활비	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통상적인 소득에 비하여 30% 이상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의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
	자녀학자금	다자녀(3명 이상)를 두고 있는 근로자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
의료비 인정범위 확대		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

- 용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 방식도 저소득 근로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(제조업 등)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유리하도록 종합점수제 방식으로 개선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해서 우대하기로 했다.

현행(용자사유 우선)	◆ 선 정 방 식 ◆	개선 후(종합점수제)
○ 의료비> 노부모요양비> 장례비> 혼례비 순으로 선정하되, 동일 용자종류 간에는 저소득, 중소기업체 생산직 근로자 우선	→	○ 용자사유의 긴급성, 근로자 및 그 가구의 소득 수준, 소속 사업장 규모 및 업종의 인력부족 정도 등을 고려 차등 배점화 하고, 종합점수 고득점자를 우선 선정 - ex) 용자사유가 긴급하고, 소득이 낮으며, 소규모·인력 부족업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됨

- 따라서 용자 종목이 신설되고 선정 방식이 개선되면 **혼례비 편중 현상**(전체 용자금액의 88.5%)이 **완화**되고,
- **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처럼 회사의 경영난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거나 자녀가 많아 교육비 부담이 큰 근로자들이** 혜택을 받게 되며
 - 출산 후 산후조리 중이거나 노인성질환으로 **요양시설을 이용**하고 있는 근로자 가구도 용자 사업을 많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.
 - 용자금액은 근로자 1인당 700만원까지 가능하며, 2종류 이상 용자 신청을 하는 경우 총 한도액은 1,000만원까지 가능하다.
 - 이자율은 연 3.0%이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다.
- ※의료비·장례비·혼례비·긴급생활유지비: 700만원 한도, 노부모요양비: 300만원 한도, 자녀학자금: 고교생 자녀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
- 정부는 자금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**내년 예산을 증액**하여 운영할 계획이다.
 - ※ 이번 용자종목 확대는 2011.9.9(금) 발표된 「비정규직 종합대책」의 일환으로 추진 되는 것임
- 확대된 용자사업은 **16일(금)부터 시행**되며, 근로복지넷(www.workdream.net)으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.
- 기타 용자종목, 신청방법,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(대표전화 1588-0075)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.

【붙임】

근로자 생활안정자금용자 제도개선 개요

□ 배경

- 근로자생활자금 대부사업이 현행 근로복지의 핵심사업이나, 재원 부족 등의 이유로 용자종목이 협소한 상황
 - ※ 기존 용자종목: 의료비, 노부모요양비, 장례비, 혼례비
 - 용자종목이 한정되어 용자금액의 88.5%가 혼례비에 편중
- 취약근로자의 복지욕구가 높은 긴급생활유지비, 자녀 학자금 항목을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

<기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 현황>

(‘10.12월 기준, 단위: 백만원, %)

구 분	대부금액(비중)	인정 요건(범위)	지원대상	용자 우선순위	용자한도액 및 용자조건
의료비	1,867 (7.6)	○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의료기관 및 약국에 납부한 본인부담 진료비 또는 약제비	용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,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	의료비>노부모요양비>장례비>혼례비 순, 동일용자종류 간에는 월평균임금이 낮은 근로자, 중소기업체 생산직 근로자 순	700만원 (노부모요양비는 300만원) 이자율 3.0% 1년 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
노부모요양비	162 (0.7)	○ 노부모가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			
장례비	811 (3.3)	○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,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			
혼례비	21,770 (88.5)	○ 혼례에 드는 모든 비용			
계	24,609 (100.0)				

□ 용자종목 확대

◇ 긴급 생활유지비, 자녀학자금 신설

① 긴급 생활유지비: 용자한도 700만원

-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해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근로자의 일상 생활유지를 지원

<지원대상>

- 용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용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119만원 이하인 근로자

<지원요건 :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>

1.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것
2.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% 이상 감소하였을 것

② 자녀학자금: 용자한도 700만원 범위, 자녀 1인당 연 300만원 한도

- 고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한 교육비(수업료 등) 지원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틈새 지원

<지원대상>

- 용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(단,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)이며 월평균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

<지원요건 :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>

- 세자녀 이상 가구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을 것

③ 의료비 인정범위 확대

-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및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

□ 대상자 선정 방식 개선

◇ 대상자 선정 방식을 종합점수제로 변경

○ 용자 종목, 임금 및 가계 소득 수준, 소속 사업장 규모 및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 선정

- 비정규, 북한이탈주민근로자 우대

○ 종합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용자종류 > 임금수준 > 가계소득 수준 > 사업장 규모 > 업종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

< 항목별 배점 >

①용자종류	배점 (30)	②월평균소득	배점 (20)	③가계 종합소득	배점 (20)	④사업장규모	배점 (15)	⑤업종	배점 (15)
의료비, 노부모요양비	30	110만원 미만	20	하위 2분위 미만	20	50인 미만	15	1그룹	15
긴급생활유지비	24	110 ~ 130만원 미만	15	하위 3분위 미만	15	50 ~ 100인 미만	11	2그룹	11
장례비	18								
자녀학자금	12	130 ~ 150만원 미만	10	하위 4분위 미만	10	100 ~ 300인 미만	7	3그룹	7
혼례비	6	150만원 이상	5	하위 4분위 이상	5	300인 이상	3	4그룹	3

《가점》 비정규직(+5), 북한이탈주민(+3)

※ 업종별 배점 차등화 그룹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(고용노동부)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업별 미충원인원, 부족인원, 미충원율, 부족률 항목에 대한 순위·점수 부여하여 4개 그룹으로 분류